

UN Global Compact Communication On Progress

예금보험공사 UN Global Compact 이행보고서 (CoP)



예금보험공사
(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)

☐☐ 목 차 ☐☐

I . UNGC 지지문 1

II . 예금보험공사 소개 2

III . UNGC 10대원칙 이행내용 5

I. UNGC 지지문

-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.
-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 관리자로서 경영진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금융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윤리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예금보험공사는 국제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17일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였으며, 인권·노동규칙·환경·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.
- 예금보험공사는 10대 원칙들을 조직의 전략과 문화로 내재화하여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.
- 예금보험공사는 매년 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에 대한 이행보고서(Communication On Progress)를 발간하고 있으며 금번 이행보고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활동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- 예금보험공사는 UN Global Compact의 원칙들을 실천하는 것 뿐만 아니라, 예금자·금융회사·정부·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UN Global Compact의 정신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.

2016. 7. 15

예금보험공사 사장 곽범국

II. 예금보험공사 소개

1

설립 목적 및 근거, 주요 업무

□ 설립 목적 및 근거

-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'96.6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
-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

□ 주요 업무

- 예금보험기금(이하 “예보기금”)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(이하 “상환기금”)의 조성 및 관리
- 부보금융회사의 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리스크 감시
- 보험사고 발생시 자금지원을 통한 부실금융회사 정리 및 보험금 지급을 통한 예금자 등 보호
- 부실금융회사 정리과정에서 취득한 금융회사 지분매각, 파산재단 자산 환가 및 배당 등을 통한 지원자금 회수
- 부실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및 손해배상청구 등

2

지배구조, 조직 및 인력

□ 지배구조

- (예금보험위원회) 사장, 당연직 위원 3명(금융위 부위원장, 기재부 차관, 한은 부총재) 및 위촉직 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, 기금운용계획, 자금지원 등 기금 관련 주요사항 심의

○ (이사회) 사장, 부사장, 상임이사(4명 이내) 및 비상임이사(7명 이내)로 구성되며, 공사의 경영 관련 주요사항 심의

□ (조직) 26개 부서(14부·5실·2국·5부서내실)로 구성



□ (인력) 임원 14명, 직원 631명

(‘16.5월말 현재, 단위 : 명)

구 분	임 원					직 원			합계
	사장	감사	상임이사	비상임이사	소계	일반직	별정직	소계	
현 원	1	1	5	7	14	549	82	631	645

□ (주소 등)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번지, 02-758-0114

3

주요 연혁

- '95.12.29 : 「예금자보호법」 제정(예금보험제도 도입)
- '96. 6. 1 : 예금보험공사 설립
- '97. 1. 1 : 은행권 대상 예금보험업무 개시(예금 부분 보장)
- '97.11.19 : 예금 전액 보장 실시
- '98. 4. 1 : 예금보험기금 통합
 - ※ 증권감독원·보험감독원·신용관리기금등 금융업종별 예금보험기구를 공사로 일원화하고, 부보금융기관의 범위에 은행외에 증권사·보험사·종합금융회사·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을 추가
- '01. 1. 1 : 예금 부분 보장으로 환원
- '03. 1. 1 : 예금보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분리
 - ※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투입된 공적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
- '04. 1. 1 : 신용협동조합을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
- '09. 1. 1 : 목표기금제 시행(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 설정)
- '11. 4. 1 :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설치
 - ※ 부실이 발생한 저축은행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
- '12. 3.26 : 조사대상 상호저축은행 범위 확대(시행령 개정)
- '14. 1. 1 : 차등보험료율제 시행
- '15.12.22 : 예금자보호법 개정
(보호대상 범위 확대,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)

III. UNGC 10대원칙 이행내용

1

[인권]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

- 예금보험공사는 헌법 제10조 및 UNGC 10대 원칙에서 정하는 인권보호 및 인권존중의 원칙을 지지하고 존중합니다.
- 예금보험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·시행하고, 인권경영을 중장기 경영계획을 포함한 경영 원칙에 반영함으로써 직무 수행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전체적인 관점에서 조화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
- 또한, 전 임직원의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통해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.

< 주요 활동사항 >

- 전통시장 상인 및 노년층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생활금융교육 제공
 -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, 금융회사를 위한 권익보호담당역 제도 운영
 - 예금보험제도 후발국가에 대한 지식나눔 활동 실시
-
- 내부적으로 임직원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,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 및 동반성장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.

2015년도 주요 추진성과

-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등 인권침해 사례 : 0건
- 종합청렴도(국민권익위원회 주관) : 2등급('14년)→2등급('15년)
- 부패방지시책평가(국민권익위원회 주관) : 2등급('14년)→등급('15년)
-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(산업통상자원부 주관) : AAA등급('14년)→AAA등급('15년)

2

[인권]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한다

- 예금협공사는 임직원 뿐 아니라 예금자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**고객의 소리(VOC) 수집 및 분석**을 통해 업무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-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**고충 상담제도, 신입직원 멘토링 제도**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정기적·비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< 임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교육 >

- (사이버교육) 직무윤리교육,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
- (집합교육) 청렴·윤리실천리더 워크샵, 내부 청렴강사 순회교육

- 또한, 외부 이해관계자는 물론 직원도 이용 가능한 **부조리신고 센터**를 운영하고, **고객만족도 조사**를 실시함으로써 인권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
- 또한, 임직원이 **인권 침해**로 인하여 사법당국으로부터 기소된 경우 이를 **징계사유**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특히, **성폭력 또는 성희롱·성매매**의 경우 사법당국의 기소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대상이며, **양정기준**을 정하고 있습니다.

2015년도 주요 추진성과

- 고객만족도(외부고객) : S등급('14년)→S등급('15년)
- 임직원의 인권침해 연루 사건 : 0건

[노동]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한다.

- 예금보험공사는 헌법, 노동관계법, ILO 등 국제조약의 기본 정신에 따라 노동조합을 존중·지원하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.
- 노사간 상호신뢰에 의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다양한 협의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< 노사간 협의채널 >

- 노경협의회(분기1회)를 통한 노사관련 핵심의제 사전 협의
- 노경간담회 및 노경실무자협의회(월 1회) 등 개최

- 노사간 정기 협의채널 외에도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. 특히, 노사간 공동으로 '노사한마음 대선언'을 채택함으로써 노사 상생협력을 대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.

< 노사간 수시 협력프로그램 >

- 노경 공동 워크샵 개최
- 직원 고충상담센터 공동 운영

2015년도 주요 추진성과

- 노사분규 발생 건수 : 0건
- 노사관계협력지수 : 84.0점('14년)→85.3점('15년)

4

[노동]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다.

5

[노동] 기업은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해야 한다.

- 예금보험공사는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으며, 취업규칙에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등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, 야간 및 휴일근무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- 직장과 가정생활간 균형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을 '가정의 날'로 지정하여 정시퇴근을 권고하고 있으며, 특히 '14년 중 해당일 퇴근시각 PC-OFF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동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.
- 출퇴근시간 선택제, 임산부를 위한 스마트워크 등 가정친화적인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·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예금보험공사는 만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, 고졸 채용으로 인하여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입사할 경우 동 직원이 건강이나 안전, 도덕의식에 해로운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직무를 구분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.

2015년도 주요 추진성과

-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취득
- 일과삶 균형지수(KDIC-WLBI) : 57.8점('14년) → 59.1점('15년)
- 부동노동행위 발생 지적건수(노동청, 법원) : 0건

6

(노동)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.

- 예금보험공사는 성별·학력·연령·출신지 등을 이유로 지원자를 차별하지 않는 열린채용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입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임직원에게 차별없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, 직위·직급 분리를 통해 능력 중심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.
- 장애인·비수도권 지역인재·고졸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 우대방안을 시행하여 사회형평적 채용을 선도하고 있습니다.

<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 우대 프로그램 >

- (장애인) 채용 전형단계별 가점(15%) 부여
- (지역인재) 서류·필기·1차 면접 전형시 합격비율 목표제 실시
- (고졸자) 고졸자를 위한 별도채용전형 마련

- 또한, 여성 예비관리자의 경력개발 지원을 실시하고, 육아휴직 기간 확대(2년→3년)과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통하여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.

2015년도 주요 추진성과

- '15년말 장애인 고용비율 : 4.3%('14년) → 4.4%('15년)
- '15년 중 고졸자 채용인원 : 2.5명('14년) → 2.75명('15년)
- '15년 중 고졸자 채용인원 : 7명('14년) → 8.75명('15년)

* 시간선택제 직원의 경우 전일제 직원의 근무시간(주40시간) 대비 근무시간으로 인원수 산정
(예 : 주20시간 근무자 1명 → 0.5명)

7

[환경] 기업은 환경문제에 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해야 한다

8

[환경] 기업은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한다

9

[환경] 기업은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

- 예금보험공사는 에너지 절감방안을 추진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,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.
- 임직원 행동강령에 임직원의 환경보호 의무를 규정하여 환경 문제에 대하여 사전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이고 있습니다.
- 지역사회 의 일원으로서 지역의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, 옥상공원 조성 및 수목 식재 등을 통해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.
- 예금보험공사는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하여 친환경 물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이를 통해 국가가 권고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

2015년도 주요 추진성과

- '15년 온실가스 배출량 : 1949.91tCO₂ (정부 기준 1949.91CO₂ 이하)
- 임직원 환경보호 사업 참여
 - 환경공감 (탄소상쇄제도 관련 식목행사, 업사이클링 캠페인) : 57명('14년) → 148명('15년)
 - 지역공감 (회사 인근시설 정화활동 등) : 101명('14년) → 116명('15년)

[반부패]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.

- 예금보험공사는 임직원의 부패행위 예방을 위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였으며, 행동강령 책임관 주관하에 반부패 청렴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모든 부패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- 임원은 취임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, 2급 이상 직원은 재산을 등록토록 하여 재임 및 재직기간 중 청렴의무 준수에 대한 높은 수준의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.
- 또한, 2급 이상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 후 3년간 유관기관에 대한 재취업을 금지함으로써 재취업을 조건으로 한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있습니다.
- 예금보험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대상 기관으로서 매년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으며, 그 외에도 자체 윤리경영지수 측정과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부패발생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
- '15년 중에는 UN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가 주관한 Fair Play 반부패 서약에 참여하여 청렴한 업무처리에 대한 공사의 의지와 노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.

2015년도 주요 추진성과

- 종합청렴도(국민권익위원회 주관) : 2등급('14년)→2등급('15년)
- 부패방지시책평가(국민권익위원회 주관) : 2등급('14년)→등급('15년)
-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 발생 건수 : 0건